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98 발의연월일: 2020. 12. 9.

발 의 자:고영인·권칠승·김민석

김성주 · 김원이 · 서동용

서영석 · 양정숙 · 이광재

이용호 · 정춘숙 · 최혜영

허종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모바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 하고 있고,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취급이 용이하며, 송달에 시간이 덜 소요된다는 점에서 전자문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특히,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미납 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기를 원할 가능성이 많고, 한편,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편의를 중시하므로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 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제79조 및 제81조의4).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 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8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4(납입고지 문서 및 독촉장의 송달) ① 제79조에 따른 납입고지 문서 및 제81조에 따른 독촉장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까지의 규정(제8조제2항 단서, 제10조제2항 및 같은조 제8항 단서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세법"은 "제79조 또는 제81조"로, "국세정보통신망"은 "공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연대납세의무자"는 "연대납부의무자"로, "국세"는 "보험료등"으로, "납세관리인"은 "납부관리인"으로, "정부"는 "공단"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공단 직원"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 "세무서",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 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각각 "공단"으로 본다.

② 제81조에 따른 독촉장의 전자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79 조에 따른 납입고지 문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받는 납부의무자 에 한정한다.

- ③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10조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 문서를 납부의무자의 신청 없이 전자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송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보험료등을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것을 신청한 경우: 제79 조에 따른 납입고지 문서
- 2. 보험료등에 관한 법 제79조에 따른 납입고지 문서를 전자송달로 받고 이를 체납한 경우(이 항에 따른 전자송달 후 제4항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1조에 따른 독촉장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우편으로 송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야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는 우편으로 송달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의 준용 및 제4항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입고지 문서 등의 전자송달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의4제3 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 료등을 내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81조의4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전자문서를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납입	<삭 제>
고지를 할 때 납부의무자의 신	
청이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이 제2항에 따라 전자	<삭 제>
문서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전	
자문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 고지	
가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u>것으로 본다.</u>	
<u>④</u> ~ <u>⑥</u> (생 략)	<u>②</u> ~ <u>④</u> (현행 제4항부터 제6항
	까지와 같음)
제81조의4(서류의 송달) 제79조	제81조의4(납입고지 문서 및 독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	촉장의 송달) ① 제79조에 따
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른 납입고지 문서 및 제81조에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따른 독촉장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 2까지의 규정(제8조제2항 단서,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세법"은 "제79조 또는 제81조"로, "국세 정보통신망"은 "공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연대납세의 무자"는 "연대납부의무자"로, "국세"는 "보험료등"으로, "납 세관리인"은 "납부관리인"으로, "정부"는 "공단"으로, "해당 행 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공 단 직원"으로, "해당 행정기관 의 장", "세무서",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 치시・특별자치도・시・군・ 구"는 각각 "공단"으로 본다. ② 제81조에 따른 독촉장의 전 자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79조에 따른 납입고지 문서 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받는 납부의무자에 한정한다. ③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10조제8한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문서를 납부의무자의 신청 없이 전자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송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보험료등을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것을 신청한 경우: 제79조에 따른 납입고지문서
- 2. 보험료등에 관한 법 제79조에 따른 납입고지 문서를 전자송달로 받고 이를 체납한경우(이 항에 따른 전자송달후 제4항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1조에 따른 독촉장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전자 송달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우편으로 송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해당 문서는 우편으로 송달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u>⑤</u> 제1항의 준용 및 제4항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른다.